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1
		제정 일자	
	수질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2 / 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폐수)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관리,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폐수처리 절차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및 방류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수질오염물질

수생태계 유입 시 유해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총칭하며, 물환경보전법 및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2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물을 말한다.

3.3 폐수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및 동 규정한 것을 말한다.

3.4 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생산공정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일련의 모든 구조물, 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을 총칭한다.

3.5 위탁운영 업체

발생한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당사의 폐수처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당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하며, 적법한 허가를 득한 업체를 말한다.

3.6 공공수역

하천, 호소, 향만, 연안해역,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계 및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모든 수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 총원 또는 예산의 승인

4.2 해당부서장 (경영지원본부장)

1)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승인/대표이사 보고

2) 생산공정의 수질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파악 및 관리업무 총괄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증설에 관련 투자계획 검토 및 승인/대표이사 보고

4)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업체의 관리, 감독 및 필요 시 별도의 업무지시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1
		제정 일자	
	수질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3 / 5

4.3 해당부서 파트장(총무팀장)

- 1)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추진
- 2) 폐수처리시설 관련 관공서 및 대외업무 주관
- 3)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운영 관리 감독
- 4)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기록의 유지 관리
- 5)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 및 시정조치
- 6)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신/증설과 관련된 투자계획 수립 및 품의

4.4 수질오염물질 배출부서장 (소재생산팀장)

- 1)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폐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 2)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또는 폐쇄 등의 사업계획 시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청
- 3) 폐수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 또는 비정상상황 발생 시 해당부서에 신속한 통보

4.5 환경기술인 (당사 재직중인 직원 선임 또는 대기환경기술인과 겸직 가능)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의 점검 / 부적합사항 발견 및 보고 (해당부서 파트장)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관공서 및 대외업무 실무업무 추진
- 3) 위탁운영업체 관리 및 소통을 통한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
- 4) 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설비보수, 자재구매 등 실무업무 추진

4.6 위탁운영업체 (위탁관리운영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에 한함)

- 1)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탈수시설 운영 포함)
- 2)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분석 실시 및 보고 (분석횟수 및 분석항목 등의 상세내용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폐수처리시설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작업 실시 (해당부서 파트장과 협의에 따름)
- 4)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및 제출 (약품, 전력, 용수사용량 확인 등)

5. 업무절차

5.1 생산현장 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파악

- 1) 해당부서 파트장 및 환경기술인은 당사의 사업활동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시설, 발생공정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 ▶ 당사 배출시설 : 다이캐스팅 설비, 세정식 집진기, 콤프레셔 , 함침설비, 열처리로
 - ▶ 당사 방지시설 : 1공장 #1, #2, #3 폐수처리장 (350m³/일)
2공장 #1 폐수처리장 (130.75m³/일)
- 2) 해당부서 파트장 및 환경기술인은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농도를 확인 및 숙지하고, 당사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수질오염물질 배출부서장은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입폐수량, 유입농도 등을 적절하게 배출하도록 배출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4) 수질오염물질 배출부서장은 공정 이상발생, 예상치 못한 사고 등 환경사고가 우려될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1
		제정 일자	
	수질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4 / 5

5.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 1) 해당부서 파트장은 당사가 보유한 설비들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2) 해당부서 파트장은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질오염물질 발생부서에 요구하여 현장과 일치하는 자료를 인허가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반드시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보완요청이 있을 시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가동 전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수질오염물질 배출부서장은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폐쇄, 원료 또는 사용물질의 변경, 공정변경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또는 사용물질의 변경 시 가급적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원료나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5) 해당부서장은 해당부서 파트장이 상신한 인허가 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5.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 1) 해당부서 파트장 또는 환경기술인은 매일 점검을 통해 방지시설의 이상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또는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2) 위탁운영업체는 당사 내에 상주하여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설비 또는 수질 이상 발생 시 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정상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위탁운영업체는 방지시설별로 약품사용량, 용수사용량, 슬러지발생량, 전력사용량 등의 정보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당부서 파트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해당부서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을 중단하여야 한다.
- 5) 해당부서 파트장은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비품을 항상 구비 하여야 하며, 복수의 협력업체들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6) 해당부서 파트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보수, 교체, 증설, 신설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운영업체에 사전에 협의하여 방지시설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 위탁운영업체는 방지시설 설비의 고장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그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거나 미뤄서는 안된다.

5.4 방류수 수질검사의 실시

- 1) 위탁운영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기술인은 제출받은 결과를 대관업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1
		제정 일자	
	수질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5 / 5

2) 위탁운영업체는 반기 1회 이상 폐수 유입수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파트장에게 보고하고 처리시설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해당파트장은 보고 결과를 토대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서와 협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5.5 교육훈련

- 1) 해당부서장은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방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정보의 습득을 위해 방지시설의 운영방법, 긴급상황 조치방법, 일상점검 및 조치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 2) 선임된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하여야 함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함

6.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문 서	보 존 년 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총무팀	3년